

지방재정 실무 백과사전



지방재정 관련 실무를 보다보면 간혹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 관련 법률이나 규정, 절차, 사례 등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 헛갈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게다가 하루가 다르게 신설 혹은 폐지되거나 바뀌는 법규정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이럴 때 궁금증을 단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백과사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게다. 그런 이들을 위해 지방재정 실무와 관련된 궁금증과 그 답변, 사례 등을 한자리에 모아서 소개한다. '지방재정' 부문에서는 신문고나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로 질의해온 것들을, '지방세' 부문에서는 최근 지방 관련 대법원 사례들을 모아서 정리했다.



‘지방재정’ 관련 궁금증 해결

글 _ 명 삼 수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실 재정정책과)

Question

명시이월사업의 재명시

2012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2013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2013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해 사고이월하지 못할 경우 편성된 예산을 불용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또다시 국회승인(국비), 의회승인(지방비)을 받아 재명시 이월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또한 명시이월된 사업을 지출원인행위하지 못하여 사고이월하지 못하여 연내 집행 불가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본 사업을 계속비이월로 변경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nswer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이러한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엄격히 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명시이월된 예산을 재차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이미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계속비 이월로 변경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향후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 새롭게 계속비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Question

재해 보상금에 대한 예비비 사용

올해 비로 인해 피해가 많아 군인을 동원하여 복구 작업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때 동원되는 군인의 식사비를 재해복구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nswer

예비비 지출의 제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다. 그렇지만 재해복구에 동원되는 군인의 식비를 자치단체가 지원해줄 수 있는 세출예산과목은 '민간인 재해 보상금' (302-02)으로 예비비 지출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예비비 사용은 가능할 것이다.

Question

예산 재배정 가능 여부

당초예산을 '경관과'와 '도시정비과'에 책정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예산액을 의회의 승인없이 예산을 임의로 '농업기술센터' (제1관서) 또는 '문화체육과' (본청)에 재배정해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Answer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및 시·군·구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담당 실·국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예산담당실·국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경리관 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업무담당과장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1관서라 함은 시·도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시·도 본청의 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가 제1관서라면 예산재배정은 가능할 것이나, '도시정비과' 예산을 시·도 본청 내의 '문화체육과' (본청)로 예산재배정 하는 것은 불가하다.

Question

전입자 지원금 지원 조례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하여 타 지자체 조례 등을 참고하여 인구증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 의회에서 조례에서 규정코자 하는 종량제봉투지급, 학생·학교·기업체 등에 대한 전입자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지원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항 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근거 규정으로 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nswer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규정은 법의 취지를 살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Question

이월 예산의 전용

이월예산의 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알고 있으나 추진하고 있던 명시이월 사업의 주체가 바뀐 경우(민간에서 자치단체 직접수행으로 바뀜) 불가피한 전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

Answer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 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다음 연도의 예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 현액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이월된 내용대로 집행만 허용되는 것이며, 당해 경비의 성질이 바뀌는 경우에는 이월된 사유와도 맞지 않게 되므로 경비성질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는 없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의 변경사용은 가능하다. ☞

‘지방세’ 주요 사례

글 _ 오 정 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실 지방세운영과)

Case 01

새마을금고가 소매점 및 금융 자동화코너시설(365일 코너)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새마을금고의 감면대상 고유 목적사업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8441 판결)

자동화코너시설은 감면대상이나 소매점은 감면대상 부동산이 아니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업무의 주된 목적이 자금의 조성 및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 사회개발 등에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취득 당시 원고의 이사회에서 소매점 부분을 회원들이나 인근 주민들의 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논의가 있었다거나 현재는 소매점 부분을 실제로 지역사회단체의 무료국악연습실이나 회의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소매점 부분이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 본문의 문언 내용과 취지, 그리고 같은

항 단서가 “취득한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그 현황과 용도, 취득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시설은 그 현황과 용도, 취득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축건물 중 금융업소 부분의 일부분으로서 원고가 새마을금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설치비용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대상인 이 사건 소매점 부분의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고, 그 전부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인 금융업소 부분의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Case 02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매매를 원인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8117 판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다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

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등기일에 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따라 무효가 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1981. 5. 8 매도인인 000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늦어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1. 6. 23에는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를 사실상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원고가 2007. 1. 2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따라 무효가 된 000 명의의 등기를 말소한 다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Case 03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유흥주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 유흥주점 허가 및 내부시설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건물을 사용하였던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8148 판결)

재산세 중과대상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다

유흥주점 영업이 일시 폐업중에 있었다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유흥주점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폐업신고와 신규 영업허가를 반복하여 왔다면, 그 건물은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장소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2),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922 판결 참조). 또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고, 영업을 함에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 참조).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2008, 2009년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난 이후 두 차례 신규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있었음에도 상호가 계속 동일할 뿐만 아니라 내부장식이나 시설이 각 폐업신고 직후와 특별히 달라진 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가건물의 프00 유흥주점은 2008, 2009년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2009. 6. 1을 기준으로 폐업신고만 되어 있었을 뿐 폐업신고일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00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방해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건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 보고 원고들에게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2),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